

- ▶ 2026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- ▶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,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호(지)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세요?

홈페이지(www.mpva.go.kr)에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🔍 검색창에 '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'를 검색해보세요.

※국가보훈부 '나만의 예우'에서는 나의 민원행정보조회 민원서비스 지원내용 등도 확인할수 있습니다.(로그인 필요)



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

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☎ 02-2225-2550

- 부산 : ☎ 051-601-6762~3
- 대전 : ☎ 042-605-0732~3
- 대구 : ☎ 053-630-7127~8
- 광주 : ☎ 062-602-6615~6
- 인천 : ☎ 032-363-9893~4

국가보훈대상자 무료법률구조 지원
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권 유족(보훈보상대상, 지원대상 포함)에게 무료로 민·가사, 형사, 행정소송 지원

▶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번으로 문의

1:1 보훈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?

전국 어디서나

1577-0606

대부금 상황, 잔액 등이 궁금하시다면?

전국 어디서나

1577-0301

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화번호는? 02-790-9652~4

보훈단체에 가입하시면 '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', '보훈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제도 안내', '보훈행사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'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

☞ 가입대상 :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 받으신 분

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 '모두의 보훈 드림' 누리집

(www.donate.bohun.or.kr)

후원하신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 됩니다.

<p>자립기반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, 교육, 재해복구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</p>	<p>예우문화 국가유공자들의 헌신·희생에 감사와 보답을 전하는 예우문화를 만듭니다.</p>	<p>노후복지 나이가 많으신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습니다.</p>	<p>의료재활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월체어 등 보조기를 지원하고, 가족상실 충격 등 심리재활을 지원합니다.</p>
---	---	--	-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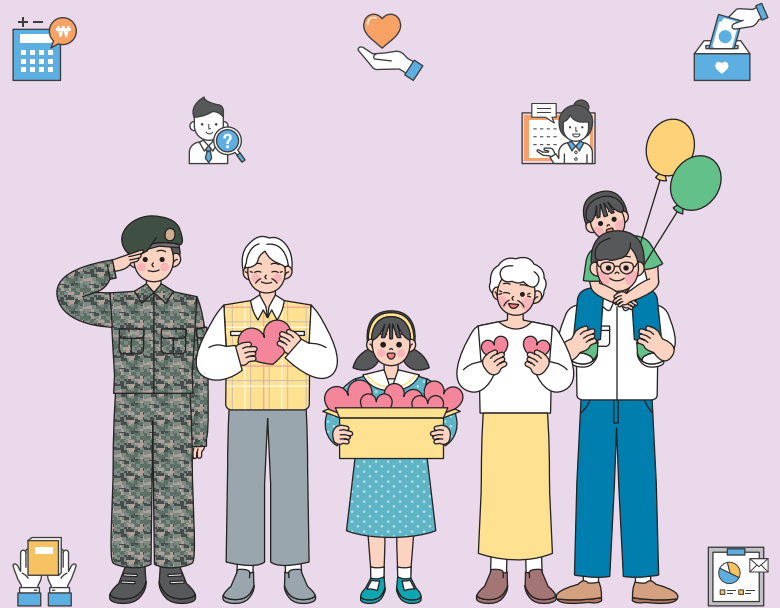
「모두의 보훈 드림」 홈페이지 QR코드

QR코드를 사용하시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.



2026 보훈가족을 위한









무공·보국수훈자 및 유족 보훈제도



모두를 위한 ‘특별한 희생에, 특별한 보상’으로 보답하겠습니다.

국가보훈부는 희생이 존경으로, 예우가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,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

- 
보훈급여금 지급 04
 매월 15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드립니다.
- 
의료지원 05
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등을 지원합니다.
- 
교육지원 06
 수업료, 학습보조비,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.
- 
취업지원 08
 가점 부여, 취업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합니다.
- 
대부지원 10
 아파트 특별공급 및 주택·농토구입,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합니다.
- 
복지지원 12
 안락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급여,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.
- 
기타지원 14
 증명서발급수수료, 국·공립공원 입장료 면제등 을 지원합니다.
- 
사망시 예우 16
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또는 모비제작비 등을 지원합니다.

※ 차량지원, 교통시설 이용지원, 보철구 지급은 전·공상군경 등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됩니다.

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에게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계좌로 무공영예수당을 입금해 드립니다.

▶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
▶ 무공영예수당 월 지급액은? (2026년도)

(단위 : 원)

○ 매월 훈격별로 차등 지급합니다.

	인헌	화랑	총무	을지	태극
금액	550,000	555,000	560,000	565,000	570,000

※ 보국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 해당 없음

○ 무공수훈자 외에 국가유공자(전.공상군경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), 6·18자유상이자,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전투종사군무원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라도 등록된 분은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·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합니다.

▶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의 금전적 지원은? -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

○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에는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※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

○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액

- 3인가족 이하 : 242,000~311,000원 / 4인가족 이상 : 300,000~370,000원

▶ 영예수당 등을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는데...

○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이 신분증을 지참, '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'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- 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통장으로 입금

○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 전용 '호국보훈지킴이 통장' 안내

- (발급가능 금융기관) 10개 은행(우체국, 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KDB산업은행, 우리은행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신한은행, 대구은행)에 국가보훈등록증(국가보훈부 발급)을 제시하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 후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예금계좌 지정 또는 변경 신청
- 단,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국가보훈부에서 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압류 가능

▶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려면

○ 보훈예우수당이란?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.

- 금액 및 지급범위는 해당 지자체 문의

▶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

○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(단, 치아보철, 성형 등은 제외)

- 무공 보국수훈자 및 유족 본인부담금 60% 감면

※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무공수훈자 본인은 90% 감면

※ '12.7.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,

감면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(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)에 한함

○ 보훈병원 주소 및 전화번호

- 중앙보훈병원 : 서울시 강동구 진행도로 61길 53(☎ 02-2225-1114)

- 부산보훈병원 :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(☎ 051-601-6000)

- 광주보훈병원 :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(☎ 062-602-6114)

- 대구보훈병원 :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(☎ 053-630-7000)

- 대전보훈병원 :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(☎ 042-939-0114)

- 인천보훈병원 :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(☎ 032-363-9800)

- 중앙보훈병원 서울요양병원 : 서울시 강동구 진행도로 61길 53(☎ 02-2225-1123)

- 부산보훈병원 부산요양병원 :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(☎ 051-601-8600)

- 광주보훈병원 광주요양병원 :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(☎ 062-604-5600)

▶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없나요?

○ 대상 : 무공수훈자 본인(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함)

○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www.mpva.go.kr) <예우보상> <지원안내> 의료지원 및 위탁병원 >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(1577-0606)에서 가까운 지정병원 확인 후,

○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,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, 진료비 (비급여 제외)의 60%를 감면해 드립니다.

○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(연간 16만원)

▶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드려요

○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이 보건소 진료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.

▶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어요 -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

○ 생활수준조사 결과,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.

○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는 생계곤란 여부, 지침 등에 의거 연중 수시로 선정됩니다.

교육지원 신청 후 법률에서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.

- ▶ '12. 7. 1.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(95. 1. 1. 이후 출생자)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
- ▶ 국민기초수급자(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) 및 차상위계층 생활수준조사 생략

▶ 자녀가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

- 교육지원 신청 후 생활등급에 해당할 경우 '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학교(행정실)에 제출합니다.
- 교육희망자 추가, 상급진학시 생활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'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학교(행정실)에 제출합니다.
 - 증명서 발급 : 가까운 보훈청 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'정부24'에서 발급
 - 재학 중 신규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
- 학습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 - 연간 지급액 : 중학교 124,000원, 고등학교 144,000원(인문계), 186,000원(전문계)
 - 지급시기 : 4월15일, 10월15일에 나누어 지급
 -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.

▶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?

-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(일부대학 미실시)
 - 가까운 보훈청에서 '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
 -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www.mpva.go.kr) >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교육지원 >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.
- 합격하셨다면, '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(또는 행정실)에 제출하세요.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.
 - 증명서 발급 : 가까운 보훈청 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'정부24'에서 발급
- 등록금(수업료)이 면제됩니다.
 - 일반 대학교의 등록금(수업료) 면제기간

2년제 대학	3년제 대학	4년제 대학	5년제 대학	6년제 대학
4학기	6학기	8학기	10학기	12학기

-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의 면제학점

구분	2년제	3년제	4년제
면제학점	84학점 이하	126학점 이하	168학점 이하

※ 국가유공자 본인은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, 성적 등의 제한없음
(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(입학학기 제외)만 면제)

-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.
 - 학습보조비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며, 연간 236,000원을 2회(4월 15일, 10월 15일)에 나누어 지급
 - ※ 학습보조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도 지급기간에 따른 제한 있음(보훈관서 문의)

▶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

- 교육지원 생활등급에 해당하시면, 관할 보훈청에 재학증명서와 특수교육대상자(장애인)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
-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.
 -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보조비 지급(4월 15일, 10월 15일)
 - 연간 지급액 : 유치원·초등학교 534,000원 / 중·고등학교 718,000원
 - ※ 특수교육대상자 외에는 중학교부터 교육지원이 실시됩니다.

▶ 장학금은 없나요?

- 교육지원 생활등급에 해당되시는 분은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.
- 신청 시기 : 4월초 및 9월초 한달간
- 신청 장소 : 재학 중인 학교를 관리하는 보훈청
- 신청 자격
 - 대학원 장학 : 대학원 석·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직전 학기 성적 80점 이상
 - ※ 지원제외 : 정규 첫학기, 해외유학·원격대학원생,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, 동등과정 수혜자
 - 특수 장학 : 특수교육대상자로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
- 제출 서류
 - 대학원 장학 : 보훈장학신청서 1통, 재학증명서 1통, 성적증명서 1통,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
 - 특수 장학 : 보훈장학신청서 1통
- 지급금액
 - 대학원 장학 : 최고 1,300,000원
 - 특수 장학 : 300,000원

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.

- ▶ '12. 7. 1. 이후 신규 등록한 무공·보국수훈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
- ▶ '12. 7. 1. 이후 신규 등록자는 취업알선 1인 3회로 횟수 제한(가점지원은 제한 없음)

▶ 채용시험 시 가산점(10% 또는 5%)을 받을 수 있습니다

-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(www.gov.kr), 읍·면·동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'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제출
 - 기업체, 초·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: 원서접수 시 첨부
 - 6급 이하 공무원 등 시험 :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, 합격자 발표 후 제출(반드시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,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)
- 가점 : 국가유공자 10%, 유가족 5%

▶ 취업이 어려우시다면...

- 이력서(사진 부착) 및 자기소개서 1통,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
-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 -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<https://job.mpva.go.kr>)으로 신청 가능
 -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,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
 - ※ 자녀는 39세까지 신청 가능
 - 운전직·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 채용 시 추천

▶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

-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, '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'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 - 공공직업훈련기관 : 기능대학,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,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, 직업전문학교 등
 - ※ 우선선발 모집 정원 및 선발 방법은 개별 모집 공고 확인 필
-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,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.
 -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
 - ※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140시간(주20시간)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
 - ※ 법정취업자의 경우 지원 불가
 - ※ 지원 횟수 3회 (동일 과정 및 과목 지원 불가)

▶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

-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(<https://job.mpva.go.kr>)에서 취업수강료 (지원과정(목) 및 지정교육기관) 확인 후,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수강 등록 후, 관할 보훈청에 '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, 개인정보사전동의서, 서약서, 영수증'을 먼저 제출하세요. (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종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청 가능)
 -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→ 관할 보훈청
 - ※ 타부처(자치단체 포함) 중복지원 불가 (예 : 내일배움카드)
 - 학습 진도율 80% 이상(수강기간 2/3 이상)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(구비서류 : 수강완료 사실확인서, 응시확인서류, 지정계좌 신청 및 동의서, 통장 사본)
 -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(70%) 입금
 - 1인당 지원한도액 :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,000,000원 (연간 1,500,000원)
 - 유가족 총 1,500,000원 (연간 750,000원)
- ※ 단, 법정취업자,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
 ※ 수강료 외 시험응시(수수)료, 검정(수수)료, 교재비는 미지원
 ※ 경비신입교육(일반, 특수)과정은 수강료 100% 지원

취업정보시스템 이용 안내

-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관서 채용정보, 취업수강료 지원, 이력서 작성 기법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오니, 많은 이용 바랍니다.
- ☞ 사이트 주소 : <https://job.mpva.go.kr>



▶ 아파트 특별공급(분양, 임대)을 받고 싶습니다

- 신청자격은?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
 -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
 -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
 - 신청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(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은 보존관서에 문의)
 - ※ 특별공급(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)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·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주소지 관할 보존청에 신청하세요
 - 주택우선공급신청서(신청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 - 개인정보동의서(동의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 - 추천서약서(서약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 - 무주택입증서류 : 현주소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(전유부) 1통
 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1통
 - 배우자 및 본인·배우자의 동거가족 도장
 - ※ 매년 1월 초 접수기간(나라사랑신문 공고 확인 요망) 이후 신청시 순위부 마지막 순서로 배정
 - ※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
- 신청 후에는?
 - 배정기준(무주택 기간, 희생 및 공헌도,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)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 순위를 결정
 -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해당 아파트 신청자 중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
 - ※ 특별공급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폰으로 확보된 주택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

▶ 긴급자금이 필요한데... -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

- 전국 국민은행, 농협은행의 “나라사랑 대출창구”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.
 - 주택구입(신축)대부 :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로 주택을 구입(신축)하는 경우
 - 주택임차대부 :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수권자 본인 명의의 전·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구
 - 주택개량대부 :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소유주택을 개보수하려는 가구
 - 사업(창업)대부 : 본인,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·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
 - 농토구입대부 : 본인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 농토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,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·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
 - 생활안정대부 : 생활비, 재해복구비, 의료비, 경조비, 보철용차량 구입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
 - ※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,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“나라사랑 대출창구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대부종류 및 조건

구분	대부한도액	연이율	상환기간	담보조건
아파트 분양	3,000~6,000만원	연 2.5%	20년균등	분양 아파트 (후취담보시 군인연금, 보훈급여금, 연대보증인-직접대부 시)
주택구입(신축)	3,000~6,000만원	연 2.5%	20년균등	구입(신축)주택
주택임차	2,000~4,500만원	연 2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훈급여금(군인연금)
주택개량	800만원	연 3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훈급여금(군인연금)
농토구입	3,000만원	연 2.5%	3년거치 10년균등	구입농토
사업(창업)	2,000만원	연 3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훈급여금(군인연금)
생활안정 (재해로 인한 경우)	300만원 (600만원)	연 2%	3년균등 (보철용 차량 5년 균등)	부동산·보훈급여금(군인연금) ·연대보증인(직접대부 시)

- ※ 보증보험은 위탁은행 대부시에만 담보 가능(위탁은행 문의)
- ※ 보훈급여금(군인연금)을 담보로 제공하는 생활안정대부(한도300만원)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도입(24.1.-)
 - 국민은행(KB스타뱅킹) 또는 농협은행(NH뱅킹) 앱을 통해 신청

- 국민은행, 농협은행 “나라사랑 대출”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존청에 문의하세요.(예산 범위 내에서 보존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)

▶ “나라사랑 대부금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감면이 된다던데...

- 대부받은 국민은행, 농협은행 지점(보훈청 대상자는 관할 보존청)에서 ‘조세면제(감면)증명서’, ‘대부재산증명서’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
 - 취득세 면제(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)
 - ※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
 - 농토 : 대부금액에 대하여 감면
 - 주택 :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
전용면적 85㎡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

▶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

- 관할 보훈청에 '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세요.
 - 신청대상 :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(배우자 또는 부모)
 - 선정기준 :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- ※ 제외대상 :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(예 :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)
 - 대상결정 : 생활수준조사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 후, 서비스 지원대상자 결정
 - 서비스지원 :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·정서지원 등 재가서비스 제공
 - ※ 주1~2회(1회 2시간 서비스 제공)

▶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

- 관할 보훈청에 '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'를 제출하세요
 - 신청대상(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)
 -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수권 유족(부모)
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~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 받고 있는 분
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- 구비서류
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 -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1부
 - ※ 기타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 필요
-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,
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,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
 - 급여부분 본인부담액의 40% 지원(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%)
 - ※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
 -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지원

▶ 장기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

-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.
 - 신청대상 : 국가유공자 본인, 배우자 및 유족(부모)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중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"시설급여" 해당자
- 수원보훈요양원 (☎ 031-240-9000), · 광주보훈요양원 (☎ 062-602-5800)
 · 김해보훈요양원 (☎ 055-340-8585), · 대구보훈요양원 (☎ 053-606-3000)
 · 대전보훈요양원 (☎ 042-829-3000), · 남양주보훈요양원 (☎ 031-579-7000)
 · 원주보훈요양원 (☎ 033-769-2000), · 전주보훈요양원 (☎ 063-220-0777)
- ※ 주간보호는 "재가급여" 해당자도 가능
 - 구비서류
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 - 주민등록등본 1부(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)
 - 전염병 질환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병원 등 발행)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 -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, 요양급여비 중 급여부분 일부 감면
 - 감면대상 :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수권 유족(부모)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- 감면율 : 본인 부담액의 40% 감면(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%)
 - ※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

▶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

- 보훈원에 '보훈원 입소신청서'를 제출하세요.
 - 신청대상 :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(자녀 제외)
 -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
 -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입증서류 필요
- 입소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- 보훈원에 입소하시면,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 지원
 - ※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☎ 031-250-1521

▶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주하고 싶은데...

- 보훈복지타운에 '복지타운 입주신청서'를 제출하세요.
 - 신청대상 : 민법상 성인인 수권 유족 중 무주택자로, 일상적인 신분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
 - ※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
- 입주대상 여부는 복지타운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 (☎ 031-250-1562)
 -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관리
- 복지타운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?
 - 8평형(독신세대)은 보증금 150만원 * 관리비 별도
 - 13평형(부부세대)은 보증금 250만원 * 관리비 별도

▶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-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

-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
 - 보훈청에서 행정안전부의 '재난관리업무포털'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자 '재해발생신고서', '피해사실확인서' 제출 (소방서, 경찰서 또는 시·읍·면·동주민센터에서 발급)
- 지급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재해위로금 지급

▶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

- 개인택시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라
- 관할 보훈청에서 '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'를 발급받아 첨부·신청
 -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 발급은 국가유공자(수권 유족)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(유공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) 중 1인에게만 발급
 - * 수권자가 부모인 경우 유공자의 제매 포함

▶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

- 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,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대상 :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, 수권 유족(단, 수권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·모 모두 해당)
 - 100% 감면시설 : 국공 및 능원, 국공립공원, 독립기념관, 전쟁기념관,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, 국공립수목원, 국공립 자연휴양림
 - 50% 할인시설 : 국·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, 공공체육시설

▶ 국내선항공기 이용요금이 할인됩니다

- 항공사 발원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 - 할인내용 :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30%(저가항공사 할인을 별도 문의)

▶ 증명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됩니다

-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증명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 -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수수료,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
 -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, 가족관계증명서,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
 -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

▶ 보훈휴양원 및 협약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

- ▶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필요, 협약콘도 및 이용방법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> 예우보상 > 기타지원 > 협약콘도 이용안내 참조

협약콘도(명)	내용	예약문의
보훈휴양원	충주 보훈휴양원 연중 이용 가능	☎ 043-854-2121 또는 http://condo.bohun.or.kr
소노호텔&리조트(前 대명)	15개 지역(패밀리 및 스위트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(주말, 연휴, 성수기예약 제외) * 잔여객실에 한해 협약 요금으로 이용 가능	전화☎ 1588-4888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sonohotelsresorts.com * 이용권 번호 객실(룸은리) : 52099159 * 소노리조트지역(소노캄비발디/경주, 울비치남해) 객실(룸은리) 52099324
한화리조트	12개 지역(20평형대 디럭스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(잔여 객실에 한함) * 성수기는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	홈페이지 예약 www.hanwharesort.co.kr * 고객센터 : 11806536
일성리조트	7개 지역(19~40평형대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(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) * 제주비치는 금·일 주말요금 적용 * 부곡은 상시영업이 아니므로 예약가능 여부를 해당 지점에 사전 확인☎055-536-9870 * 금, 토, 공휴일 전일 예약은 가능하나, 별도 요금 적용 * 자세한 이용사항은 업체 문의	전화예약☎ 1566-8113 또는 예약사이트 www.ilsungresort.co.kr * 법인번호 : 62239063
호반호텔앤리조트	3개 지역 * 연중(주말 연휴 제외 /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) * 아일랜드리조트(안면도), 포레스트리조트(제천), 레스트리조트(제천) 주말, 연휴 예약불가 * 자세한 이용사항 업체 문의	홈페이지 예약(www.resom.co.kr) * 리솜 홈페이지(resom.co.kr) 접속 후 우측상단 회원가입 > 회원정보에서 "MOU" 선택 > 업체 "국가보훈부" 선택 후 인증번호(1400) 입력 > 회원가입 완료 후 "패키지 예약" 진행
청풍리조트	충북 제천 소재(7.9평형 스탠다드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 *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으로 이용 가능 * 성수기, 연휴 등 예약 가능하나, 요금 별도문의	전화예약☎ 043-640-7000
주문진리조트	강원 강릉시 주문진 소재(10~19평형대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 * 성수기, 연휴기간은 요금 별도 문의	전화예약☎ 033-661-7400

* 예약번호, 고객센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이용 전 반드시 확인요망



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무공수훈자 및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입니다.

▶ 먼저, 가까운 보호(지)청에 연락주세요

○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호(지)청에 전화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, 화장장 감면을 위한 '국가유공자 확인원'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.

-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음
- ※ 태극·을지 무공수훈자의 경우 대통령 명의 조화 근정 및 경찰 에스코트 지원
- ※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보훈등록증 소지 시, 화장장 감면 가능(확인원 대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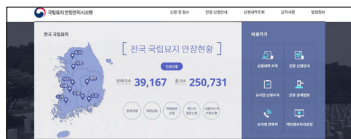
▶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

- 지원대상 :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 의증환자(수당지급 대상자)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
- 지원내용 :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
※ 계약체결 상조업체를 통해 인력 및 장례용품 지원(장례지도사, 수의, 상복, 관, 장의 차량 등)
-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보호(지)청 보상과에 반드시 '장례기간' 중 유족이 신청

▶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에 신청하세요



①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검색



② 본인인증 후 안장신청 클릭



③ 묘지선택 후 신청

- 국립대전현충원(<http://www.ncms.go.kr>), 국립서울현충원(<http://www.snmb.mil.kr>)
- 신청 후 기다리시면, 휴대폰 문자로 안장 대상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- 범죄경력, 병적이상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일 이내에 안장 대상여부가 통보됩니다. 다만, 범죄경력 및 병적이상이 있는 경우 안장이 불가할 수도 있음
- 국립연천현충원 '27년 준공 예정
-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

▶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면...

- 안장식 일정을 국립묘지 현충과와 협의하여 정하시고,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.
- 화장장에 확인원 증명을 제출·화장 하신 후, 국립묘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하시면 됩니다.
※ 화장장 감면 유·무 및 감면율은 해당 화장장으로 문의
- 태극·을지 무공수훈자께서 작고하신 경우, 대통령 명의의 조화 및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며, 빈소에서 장지까지 경찰이 에스코트 해 드립니다(2019년 신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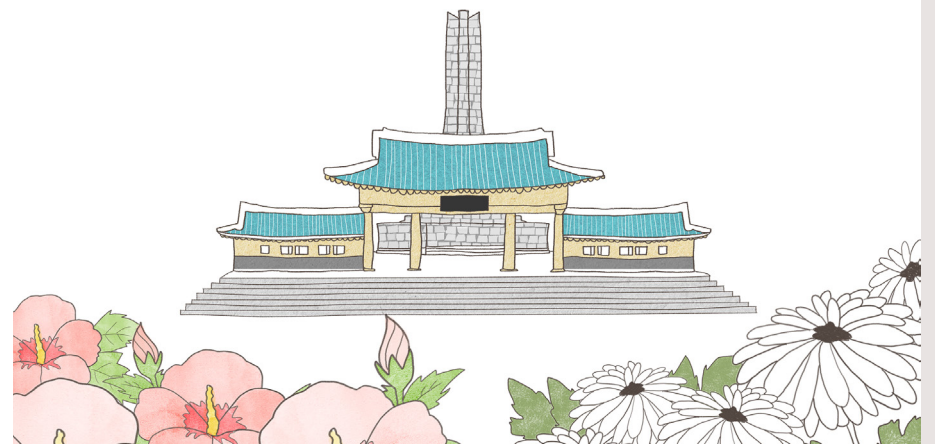
▶ 배우자를 합장하려면...

-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, 배우자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·국립대전현충원 (T. 042-820-7051) ·국립서울현충원 (T. 02-826-6238)
·국립이천호국원 (T. 031-645-2345) ·국립영천호국원 (T. 054-330-0850)
·국립임실호국원 (T. 063-640-6081) ·국립산청호국원 (T. 055-970-0770)
·국립괴산호국원 (T. 043-830-1177) ·국립제주호국원 (T. 064-730-8470)

▶ 생전(生前)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?

- 아래 국가유공자는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생전 안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대상 :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,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
* 국적상실자 신청 불가
- 신청방법 :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관할보훈청·국립묘지에 신청



▶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하고 싶어요

- 선산 등에 안장한 경우 묘비 설치 후 5년 이내 관할 보훈청에 '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시거나, 봉안장·자연장 등 안장시설에 안장한 경우에는 안치 후 5년 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'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제출서류 : 신청서, 비석 설치 사진(또는 안장시설 안치 사진), 세금계산서(또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의 증빙자료),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
※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은 '안장확인서' 추가로 필요하며 '23.1.1. 이후 사망자부터 지원 가능'
-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기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.
※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

▶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-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사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.
- 관할 보훈(지)청에 사망신고(전화)하시면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.
- 승계순위 : 배우자 → 자녀 → 부모 순으로 권리 승계
- 보훈청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고 결정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.
-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 후 선순위 유족의 사진 1매(3.5X4.5cm,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사진 크기)와 신분증 지참하여 보훈(지)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▶ 국가보훈등록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- 그동안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지원되던 수혜(무공명예수당 등) 외에 가족으로서 받던 수혜는 모두 유지됩니다.

꼭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세요.

- 본인·배우자·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사망 또는 국적 상실, 국적 회복
 - 국가유공자의 결혼·재혼(배우자 포함)·이혼·자녀출생 등으로 친족관계가 발생·소멸된 때
 -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
 - 국가유공자(수권 유족)의 주소 변경, 영주권 취득
- 국가유공자가(수권 유족)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



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

기관명	관할 지역	주소·전화번호
서울지방보훈청	서울특별시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강동구, 송파구,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은평구	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 (02)3785-0815
서울남부지방보훈청	서울특별시 구로구, 금천구, 관악구, 동작구, 강남구, 서초구	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 (02)3019-2300
서울북부지방보훈청	서울특별시 종로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도봉구, 강북구, 노원구	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(02)944-9260
경기남부지방보훈청	수원, 안양, 과천, 안산, 평택, 오산, 의왕, 군포, 시흥, 화성	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(031)259-1801
인천보훈지청	인천광역시, 부천, 광명, 김포	인천 미추홀구 석성로 239 (032)588-4100
경기북부지방보훈청	의정부, 동두천, 구리, 고양, 남양주, 파주, 포천, 양주, 연천, 가평, 양평	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89 (031)843-5748
경기동부지방보훈청	성남, 하남, 광주, 용인, 안성, 이천, 여주	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, 대경빌딩 3층(언남동) (031)289-2302
강원서부지방보훈청	춘천, 원주, 화천, 양구, 홍천, 인제, 철원, 횡성	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(033)258-3609
강원동부지방보훈청	강릉, 속초, 동해, 태백, 삼척, 고성, 양양, 정선, 평창, 영월	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310 (033)610-0606
대전지방보훈청	대전광역시, 논산, 계룡, 금산, 부여	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(042)280-1114
충남서부지방보훈청	보령, 서산, 당진, 태안, 홍성, 예산, 청양, 서천	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(041)630-3700
충남동부지방보훈청	세종특별자치시, 천안, 아산, 공주	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(041)589-4900
충북남부지방보훈청	청주, 진천, 보은, 영동, 옥천	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(043)285-3213
충북북부지방보훈청	충주, 제천, 단양, 음성, 괴산, 증평	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 (043)841-8800

기관명	관할 지역	주소·전화번호
대구지방보훈청	대구광역시, 상주, 김천, 구미, 경산, 성주, 칠곡, 고령, 군위, 청도	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(053)230-6010
경북북부지방보훈청	안동, 영주, 문경, 봉화, 의성, 영양, 청송, 예천	경북 예천군 행복1길 5 (054)650-1400
경북남부지방보훈청	경주, 포항, 영천, 영덕, 울진, 울릉	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(054)778-2600
부산지방보훈청	부산광역시	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(051)469-8991
울산보훈지청	울산광역시, 양산	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7 (052)228-6500
경남동부지방보훈청	김해, 창원, 밀양, 거제, 창녕, 의령, 함안	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도로 10 (055)981-5600
경남서부지방보훈청	진주, 사천, 통영, 남해, 하동, 고성, 함양, 거창, 합천, 산청	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-5 (055)752-3881
광주지방보훈청	광주광역시, 나주, 담양, 장성, 화순, 강진, 장흥, 해남, 완도	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(062)975-6500
전남동부지방보훈청	순천, 여수, 광양, 곡성, 구례, 보성, 고흥	전남 순천시 팔마2길 7 (061)720-3200
전남서부지방보훈청	목포, 무안, 영광, 진도, 함평, 신안, 영암	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(061)273-0093
전북동부지방보훈청	전주, 남원, 완주, 진안, 장수, 임실, 순창, 무주	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(063)239-4500
전북서부지방보훈청	익산, 군산, 정읍, 김제, 부안, 고창	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8-5 (063)850-3702
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	제주특별자치도	제주 청사로 59, 3층 (064)710-8411

